

심사규정

1999년 10월 25일 제정

2002년 5월 31일 제정

2006년 4월 8일 제정

2007년 6월 23일 제정

2008년 6월 8일 제정

2009년 7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운동학 학술지(KINESIOLOGY: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xercise Professionals)에 게재하기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심사위원 선정과 의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학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관한 학계의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하며, 가능한 박사학위소지자 이상을 선정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 시 논문 투고자와 같은 대학에 재직 중인 자나 투고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제외시킨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학회에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3. 투고 논문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요건) 심사위원의 자격은 운동학 분야의 교육, 연구 및 현장 활동이 탁월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 한국체육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대한운동사협회 혹은 유관 학회 임원
2. 운동학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강사 이상
3. 운동학 분야 운동원 경영자 혹은 임원
4. 운동학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 혹은 한의사
5. 운동학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6.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운동전문자격증 소지자

제4조(심사의 절차)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논문심사는 해당 호의 학술지 발간일 3개월 내외로 편집위원회에서 지정된 기일 전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2. 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투고자 성명, 소속 등 투고자를 암시하는 관련 문구를 삭제한 후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심사를 의뢰할 때 학술지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을 숙지하고, 엄정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당부하는 서식과 함께 심사서(별지 제4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3. 1차 심사에서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한다.
4.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각 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하여 1차적으로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하되, 심사평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본 규정의 제4조 심사 결과의 처리에 따라 진행한다.
5. 논문이 투고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투고 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의 자세) ①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에 상반되는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③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⑤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 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⑥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⑦심사위원은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⑧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이 타인에 노출되어 인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중복 및 표절 심사) 심사에 임하기 전에 심사논문의 중복 및 표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복수 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7조(제목의 심사) ①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 전반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②가급적 지나친 전문 용어나 약어의 사용은 피하고, 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국문과 영문 초록 심사) ①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②연구방법은 적용된 방법(양적, 질적)의 주요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는 연구 문제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결론과 제언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③국문과 영문초록은 정해진 분량 이내에서 기술되어야 하며, 국문과 영문의 내용이 유사하여야 한다.

제9조(서론의 심사) ①독창적이며 흥미로운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하며,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 배경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의 목적이 명확히 언급되어야 한다.

②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배제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인용은 가급적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인용된 자료가 2차 자료인 경우에는 2차 자료 인용형식에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③최근의 관련 연구 경향만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문제의 학문적, 경험적 발전과정도 필요에 따라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제10조(연구방법의 심사) ①관련 운동학자가 기술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어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②관찰 또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과 특성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연구절차가 제시되어야 하며, 도구를 사용한 논문일 경우 도구의 특성(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③적용된 통계적 분석방법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
- ④연구방법(통계적 방법)에 대한 전문적 평가에 한계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반송해야 한다.

제11조(결과의 심사) ①연구문제나 가설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과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질적 연구인 경우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를 서술한다.

- ②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분석 결과만을 정리하여, 가급적 동일한 자료가 복수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도록 한다.
- ③연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표와 그림은 실지 않는다.
- ④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의도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⑤통계용어, 약어, 기호의 의미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약자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한다.

제12조(논의의 심사) ①결과에서 얻어진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 ②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또는 상반된 결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호하거나 비논리적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 ③연구 진행과정의 문제점 및 제한점 등도 다를 수 있으며, 결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결론의 심사) ①결론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수치를 제시하며 반복 설명하는 사례이다. 결론에서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 진술은 주어진 연구(실험) 방법(설계)의 범위 안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 ②비실험, 유사실험, 조사 및 관찰연구에서의 인과적 결론은 이론적 근거, 비허위적 관계, 시간적 전후관계, 연관성 정도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히 진술되어야 한다.
- ③결론은 연구 목적(문제)과 연관시켜 진술하되 검증 되지 않은 가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안할 수 없다.

제14조(참고문헌의 심사) ①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 ②목록에 포함된 문헌은 투고규정의 다양한 표기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③참고문헌은 연구의 충실성과 신빙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매우 철저히 정리되어야 한다. 본회 투고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문헌들의 표기 방법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한다.

제15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판정하며, 1차 심사에서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심사위원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게재를 결정한다.

- ②2차 심사에서 1차 심사에서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며, 수정 및 보완사항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게재가' 여부를 판정한다. 2차 심사에서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③논문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투고자가 2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⑤최종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본인의 서명이 날인된 저작권이전동의서(별지 제1서식)를 위원회로 송부하며, 이후 이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16조(이의 신청) ①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별지 제2서식)에 학술지 권호, 투고논문 제목(한글, 영문), 이의신청자(교신저자) 및 이의신청내용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이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의제기 과정은 해당 심사위원과 저자가 상호 상대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진행한다.

③해당 심사위원과 저자 사이에 학문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제17조(논문 심사기준 및 종합판정) ①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의 논문심사서에 평가등급에 따른 종합판정(별표4)을 하여 위원회로 제출한다.

②게재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2인, 경우에 따라서는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8조(게재 여부)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심사비 지급) 논문 심사에 응한 심사위원에게는 편당 소정액의 논문 심사비와 재심사비를 지급한다.

부칙[1999.10.25]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5.31]

이 규정은 200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4.08]

이 규정은 200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3]

이 규정은 200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08]

이 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27]

이 규정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심사종합판정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